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74,407,103	44,232,213
일반회계	1,121,276,749	33,638,302
특별회계	353,130,354	10,593,911
공기업특별회계	261,245,288	7,837,35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0,383,997	3,011,5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60,464	2,830,8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500,827	1,995,025
기타특별회계	91,885,066	2,756,552
주택사업특별회계	3,640,687	109,22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094,492	122,83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35,000	4,05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073,061	152,192
교통사업특별회계	17,205,996	516,18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7,826,661	1,134,8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3,909,169	717,2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13,31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